##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(장경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702

발의연월일: 2020. 12. 18.

발 의 자: 장경태·김진애·노웅래

양정숙 · 오영환 · 유정주

윤건영 • 윤준병 • 이용빈

이원욱 · 김남국 · 전용기

정취숙・조용천・홍성국

홍정민 의원(16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'19년 상반기 여객자동차 운수가맹사업 최초 면허가 발급된 이후 플 랫폼을 통한 택시 호출서비스의 이용자 만족도가 높고 가맹점으로 가 입한 택시의 수입이 개선되는 등 가맹택시가 크게 활성화 되고 있음.

그러나, 현행법에 따르면 운송사업자는 둘 이상의 가맹점에 가입할 수 없어,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여러 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일한 가맹점에만 가입할 수 있어 가맹사업자는 가맹점을 선점하게 되어 이는 신규 가맹사업자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.

이에 가맹사업자의 독과점을 방지하고, 가맹사업자 간 경쟁을 유도를 통해 택시서비스의 개선효과를 높이기 위해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경우에는 보유 차량별로 다른 가맹점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

(안 제49조의11).

법률 제 호

###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률 제17234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9조의11제2항 중 "운송사업자는"을 "운송사업자는 동일한 차량으로"로 한다.

#### 부 칙

이 법은 2021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법률 제17234호 여객자동차	법률 제17234호 여객자동차
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	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
제49조의11(여객자동차플랫폼운	제49조의11(여객자동차플랫폼운
송가맹점) ① (생 략)	송가맹점) ① (현행과 같음)
② <u>운송사업자는</u> 둘 이상의 운송	② 운송사업자는 동일한 차량으
가맹점에 가입해서는 아니 된	<u>로</u>
다.	<b>.</b>
③・④ (생 략)	③・④ (현행과 같음)